

지원금 등 추가징수 통지서

사업장 (훈련기관)	① 명 칭			
	② 소재지			
훈련생 (근로자)	③ 성 명		④ 생년월일	
	⑤ 주 소		⑥ 전화번호	
⑦ 반환대상 금액		원		
⑧ 추가징수액		원		
⑨ 납부할 금액 (⑦+⑧)		원		
⑩ 반환명령·추가징수 사유		⑪ 납부방법	1. 일시납부 2. 분할납부	

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반환·추가징수를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○○지방고용노동청장(지청장·출장소장)

직인

※ 행정심판·행정소송 안내

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